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9

제출년월일 : 2010. 8. 16.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도시공원법」이 도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와 점용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정비하여
-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적법행정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점용료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규정 (안 제3조).
- 나. 연 점용료 분할 징수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안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금액별 구분하여 분할 징수토록 규정(안 제4조).
- 다. 점용료의 강제징수 항목을 신설(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2010. 1. 22. ~ 2. 11.(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징수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8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3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 하는 단기시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4. 기존 시설물의 사용	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3
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